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12월 20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0일

3. 제안 이유

-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중 샤워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자진납부함을 설치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징수 규정이 일부 불합리하여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입장객 편의를 도모코자함.

4. 주요 골자

- 샤워장 시설사용료 조항 삭제(별표2)

- 샤워장 시설사용 1회시

- 어 른 : 500원

- 학 생 : 300원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샤워장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